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손해배상(기)

원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

1.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2.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,914,161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
[REDACTED]까지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